

집합투자규약 변경안내

집합투자규약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6년 12월 7일(수)

□ **대상 펀드**

1.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2. AB 셀렉트 미국 증권 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3. AB 퀄리티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□ **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제2호	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 사항반영	라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라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제33조(이익분배) 제1항	개정세법 반영 - 펀드 결산시 평가/매매차익 유보 가능 문구 추가	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(零)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	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고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(零)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
제43조(신탁계약의변경) 제4항	문구 정정	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(삭제)